

<p>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도시가스요금(다만,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 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,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제4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5. 기획예산실장, 행정관리국장, 보건복지국장, 산업경제국장, 시정기획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제3조 제2항 중 “보건사회국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 제2항 중 “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”로,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중등교육국장”을 “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9조 제2항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32조 중 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, “문화행정계장”을 “문화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35조 제1항 중 “11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”을</p>	<p>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문화관광국장과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5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체없이 각 학무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”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”를 “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2조”로 하고 “규정함”을 “정함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) ① 서울특별시립 초·중·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한다.</p> <p>② 영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(학생수 60명 미만)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,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상실)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</p> <p>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·퇴학한 때</p> <p>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</p>
--	--

<p>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</p> <p>4.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제1항 중 “영 제28조제5항”을 “영 제59조제5항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”를 “당선자로 하고,”로 한다.</p> <p>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9조(심의사항)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학교규정의 제·개정 2.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3.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4.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전의 사항 5.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·심의 요청한 사항 <p>②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</p> <p>③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제3항 중 “학교운영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</p> <p>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④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자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8조(간사)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. 다만,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장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>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8조의 2를 삭제한다.</p> <p>안 【별표1】 중 학원시설 규모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“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, 생활편의시설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480㎡를 초과할 수 없다”</p> <p>안 【별표2】 중 3.자동차운전 가·기능교습장 부지 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“1종 대형 반 병행시는 3,000㎡ 이상, 레이커면 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2,332㎡ 이상, 트레일러면 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,617㎡ 이상,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반 병행시는 1,000㎡ 이상 부지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”</p> <p>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5조제2항 중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하며, 부제내 각 단위 교습 시간 사이에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.”로 한다.</p> <p>제7조의 제목 “(과외교습소의 부제운영)”을 “교습소의 부제운영”으로 한다.</p> <p>별표1, 별표2,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·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로 본다.</p> <p>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진행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·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
--	---